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5년 4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4일

3. 제안이유

가.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주요현안 집중 대응을 위해 부지사의 사무
분장이 변경되었음

나. 사무분장에 따라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장을 정비하고
자 함

다. 협의회를 비상설화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안 제2조)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건강생활실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비상설화를 위한 조항 신설

나. 위원의 임기 삭제(안 제4조)

다. 회의운영 방식 변경(안 제6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가.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북도는 지난해 8월 9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를 개정하여 행정부지사 및 정무부지사 체제로 전환하고,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정무부지사 소관 업무 제외)’은 행정부지사 소관업무로 일원화했음²⁴⁾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부지사) ① (생 략)	제4조(부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제부지사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3. 정부, 국회, 언론,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부지사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3. 삭제 <2024.8.9.> 4.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경제부지사 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바이오식품의약국, 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 및 그 밖에 경제관련 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 2. 의회, 정부, 국회, 언론, 정당, 경제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무부지사 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신설) 2. 의회, 정부, 국회, 언론, 정당, 경제단체 등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수행 3. 경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1호에서 이동 및 축소) 4.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4) 행정운영과-19823(2024. 8. 26.) 행정·정무부지사 분장사무 및 결재방안 알림

○ 이어 같은 해 11월 27일 정무부지사의 부서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 현안 추진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경제 관련 사무분장 범위를 **경제·복지·과학·인구·청년·공항** 등의 업무로 확정²⁵⁾하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가 행정부지사 사무에서 정무부지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에서 행정부지사로 명시된 규정을 수정 및 정비하려는 것임.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3,000개 정비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안내²⁶⁾ 하고 매월 지자체 대상 정비실적 점검을 추진하고 있음

< '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 행정안전부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조례상 위원회	신설 위원회		신설 최대한 억제
	미개최위원회	3년간 미개최	⇒ 폐지
		1년간 미개최	⇒ 정비계획 수립 또는 활성화
	비효율위원회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기능 유사중복	⇒ 통·폐합
		기능 독립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전)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전少) 비상설화

※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정비대상은 아니나, 필요할 경우 행안부 및 소관 부처로 법령 정비요청(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25) 행정운영과-27562(2024. 11. 27.) 정무부지사 분장사무 및 결재방안 알림

* 실국 사무 : 경제통상국, **보건복지국**, 과학인재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공항지원팀

26) '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행정안전부, 2025. 4.)

- 전국 지자체 위원회 수 : '24. 12월 기준 27,925개

※ ('21년) 28,621개 (2.0% ↑) → ('22년) 28,652개(0.1% ↑) → ('23년) 28,199개(1.6% ↓)

- 이에, 충청북도에서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 활성화, 비상설화, 법령개정 건의, 통·폐합’ 등으로 정비를 추진중임

< 2025년도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총괄) >

구 분	정 비 방 안					
	계	활성화	비상설화		법령개정 건의	통·폐합
			조례개정	내부방침		
정비대상 위원회	19	9	3	1	6	-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²⁷⁾ 반드시 구성이 되어야 하지만, 최근 5년간 개최 실적이 단 1건(’21. 11. / 서면개최)에 그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설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25년도 비상설 전환 대상 위원회 : 4개 >

연번	소관부서	위원회명	설치근거	임의/ 강행	’25년 계획
계	4개				
1	감사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법령	임의	조례 개정
2	보건정책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법령	강행 (조례위임)	조례 개정
3	교통철도과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법령	임의	조례 개정
4	경제자유구역청	(경자청)분양가심사위원회	법령	강행 (조건부)	내부 방침

27) 「국민건강증진법」

-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이에, 보관복지국 소관 업무가 정무부지사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개최 실적이 미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비상설화를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음

나. 주요 내용 검토

- 이 개정안의 안 제2조제2항은 “행정부지사”를 “건강생활실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② 위원장은 <u>행정부지사</u> 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② 위원장은 건강생활실천 <u>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u> 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위 개정은 앞서 언급한 사무분장 범위의 확정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고 내용 또한 적절함
- 또한, ‘정무부지사’가 아닌 ‘건강생활실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표현한 것은 차후 부지사 명칭 변경 등의 사정 발생 시 개정 소요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난해 11월 27일 사무분장 범위가 확정되었으나, 조례 개정 없이 약 5개월간 입법 미비 상태였던 부분에 관해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²⁸⁾

○ 이와 함께, 개정안의 제2조제4항으로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 협의회를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를 신설함

○ 또한, 제4조(임기)의 삭제 및 제6조(회의운영)에서 “협 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협 의사항이 발생시 협의회를 개최한다”로 수정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비상설화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u>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u>남은 기간으로 한다.</u>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의 협의 사항이 <u>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u>	<u>④ 협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u> <u><삭 제></u> 제6조(회의운영) ----- ----- <u>발생시 협의회를 개최한다.</u>

- 28) ① 사무분장 범위 확정 이후 2025년 1월·3월 임시회(제423회·제424회 임시회)에 제출했어야 했으나 지연 5개월이 지난 4월 임시회(제425회 임시회)에 제출한 사유
 ②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관리하는 행정국과 협의하여 종전처럼 정무부지사의 사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괄개정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사유

○ 다만, 협의회는 당연직인 위원장(정무부지사)과 부위원장(보건복지국장)을 포함해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촉위원의 경우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 또는 임명하되, 임기 3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협의회의 비상설화를 위해 지난 2월로 기존 위촉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신규 위촉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협의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력풀(pool)의 관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7일,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 범위 확정으로 조례의 위원장을 건강생활실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정무부지사)로 개정하여 사무에 맞게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차후 개정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표현한 것은 타당성이 있음

○ 또한, 지난 5년 동안 1회의 서면회의만 개최되는 등 개최 실적이 저조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비상설화 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협의회 개최가 필요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
따른 사항의 심의나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과 관련해 협의할
사항이 발생 시, 이를 담당할 협의회의 신속한 구성을 위해 관련 분
야 전문가 및 지역사회 인력풀(pool)에 대한 준비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